

#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병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2
----------	-----

발의연월일 : 2022. 3. 10.

발의자 : 원병일, 이영환, 박은경,  
최성임, 박성찬

## 1. 제안 이유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지역봉사지도원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원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 6.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노인복지법」

##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중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3(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u></p>
<p>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u>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운영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로당으로 한다.</u></p> <p><u>&lt;신설&gt;</u></p>	<p>제3조(지원대상) ----- ----- ----- ----- <u>시장</u>----- ----- ----- -----.</p> <p><u>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u></p> <p><u>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p>

<신 설>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3(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5조의2제3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개정조례안 제5조의2제3항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로당 회장 및 읍면동 분회장 활동 경비 : 556명  
(연도별 경로당 10개소 증가 감안)

나. 추계결과

- 인 원 : 556명(16개 읍면동 분회장, 540개 경로당 회장)
- 활동비 : 5만원/명/월
- 소요예산 : 250,200천원(50,000원\*556명\*9월)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250,200	339,600	345,600	351,600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명)	556	566	576	586

다. 재원조달방안: 매 회계연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4. 작성자 : 노인복지과 과장 정금성 / 노인정책팀장 원경희

☑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  
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